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. 10. 13 선고 2015가단53396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

피고1. 한성테크 유한회사

2. 유한회사 보명테크

변론 종결2015. 9. 22.(피고 한성테크 유한회사에 대하여)

무변론(피고 유한회사 보명테크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15. 10. 13.

주 문

1. 피고 한성테크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 2011. 7. 18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6,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 유한회사 보명테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2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 판결)

판사안석

별지